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4. 5. 3]
규칙 제4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 ①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변경)이용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이용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험료) 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이용료

구 분		공간별	분 류	단 위	사용료 (원)	비 고
시 설	증평인삼 문화센터	삼나와락	강의실 (25인 규모)	1회	5,000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회의실	강의실 (25인 규모)	1회	5,000	
	34플러스 센 터	회의실	강의실 (25인 이상규모)	1회	10,000	
		공유형 부엌	강의실 (25인 규모)	1회	10,000	

※ 1회는 4시간 기준으로 오전(9시~13시), 오후(14시~18시)시간을 말함.

[별표 2]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프로그램 체험료

구 분		공간별	분 류	단 위	수강료 (원)	비 고
시 설	증평인삼 문화센터	삼나와락 새싹농장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1회	5,000	
		뷰앤휴 족욕카페	족욕카페 체험프로그램	1회	5,000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행사의 명칭 (또는 이용목적)					
행사(변경)의 내 용					
사용(변경)기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참석 인원	명	
사 용 대 상	기본시설				
	부속시설				
	자료이용				
사 용 료 감 면 사 유	면 제		50퍼센트 감경		비 고
					증빙자료 첨부
붙 임	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 승인서

사 용 자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사 용 목 적 (행 사 명 등)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대 상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 타				
사 용 료		계				
그 밖의 사항 (이 용 조 건)						
<p style="text-align: center;">「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증 평 군 수 적인</p>						